

 신안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규정	규정 번호	2-4-39
		제정 일자	2022. 9. 19.
		개정 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한다)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지역 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교육과정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에 맞추어 정한 교육방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계획한 교육내용 및 운용방법을 의미한다.

② 전공교과 구성단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기초교과목 : 모든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신안산대학교 인재상 및 직업기초역량이 융합된 교과

2. 직무기반교과목 : 학과 교육 목표에 기반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연관역량을 기반으로 한 이론교과 및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습교과의 전공교과

3. 일반교과목 : 학과 교육목표에 기반하고 모든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교과

4. 융합교과목 : 융복합 매트릭스 실현을 위해 타 학과(전공)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또는 해당 학과 학생을 위해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직접 설계, 운영하는 교과

5. 대학핵심역량교과목 : 모든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신안산대학교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과 <2022. 11. 24. 신설>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 본 대학의 교과구분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이루어지며 교양교과는 교양 선택과 교양필수로, 전공교과는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눈다.

② 학과별 전공교과 교육과정표의 총 편성학점은 70학점(3년제는 102학점) 이하로 한다. 단 장기 현장실습은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교양 교육과정은 전공학과에서 편성하며 매학기 총 편성학점은 2년제는 6학점, 3년제는 10학점으로 한다. <2022. 11. 24. 개정>

④ 교양교과는 직업기초역량 교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공교과의 시수의 50%이상은 실험실습으로 편성하되, 인문사회계열은 30%이상으로 편성한다.

⑥ 전공교과의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개발) ① 교육과정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하고 정규 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에 적용한다.

1. 내·외부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교육과정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졸업생·산업체 요구조사 분석, 교양교육과정 학과별 직업기초영역 수요조사)

2. 인재양성유형설정 및 교육목표수립

3. 직무정의

4. 직무모형설정

5. 직무별 역량검증

6. 교과목 도출

7.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8. 역량 교과목 연계성 기술

9.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② 각 학과에서는 역량기반 학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개발은 학과별 3년 주기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운영성과 및 산업체 동향 등에 따라 그 시기를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개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학과명 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우(단, 학과명 명칭이 단순 변경으로 인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없을시 미개발 가능)
2. 인력양성유형 변경으로 인한 경우
3. 학과를 신설한 경우
4. 학생 보호조치 대상 학과(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없을 시 미개발 가능)

제5조(교양교육과정개발) ① 교양교육과정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정규 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에 적용한다.

1. 기초학습능력(각 개별 전공교과목 연계 교육과정)
2. 직업기초능력
3. 신안산대학교 인재상 및 학과 교육목표

② 각 학과에서는 역량기반 학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교과목을 신설, 폐지, 폐지 후 대체의 방법으로 개편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장이 지정한 기간에 학과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교육과정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제출 후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30., 2024.3.20.>

③ 대체과목을 지정하는 것은 전공필수 과목을 폐지하고자 할 때만 가능하며, 대체과목은 기존 과목과 교육과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으로만 가능하다.

④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역량기반 학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 ① 학과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본 규정 제4조 3항에서 정한 교육과정 개발주기가 완료되기 1개월 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품질위원회는 학과별 교육과정개발보고서를 심의·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는 인증결과와 교육과정 편성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③ 교육과정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2. 보완
3. 미인증

④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학과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에 인증결과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품질관리(CQI)) ① 학과별 교육품질위원회에서는 교육품질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교육품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목 CQI 보고서
2. 학과 CQI 보고서

②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보고서의 작성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CQI 보고서 : 연 2회(학기당 1회)

2. 학과 CQI 보고서 : 연 1회

- ③ 교육품질위원회에서는 학과 CQI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여 교육품질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평가결과는 학과 교육품질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 절차) 교육과정의 개편 및 편성은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